안전신문고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 '4대 불법 주 · 정차' 버튼 선택



2 4대 불법 주 · 정차 위반유형 선택



3 촬영시차 1분 이상 신고사진 2장 촬영 · 첨부



4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 신고내용(자동입력) ➜ 제출 · 접수



소화전 · 버스 정류소 · 교차로 모퉁이 · 횡단 보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불법 주 · 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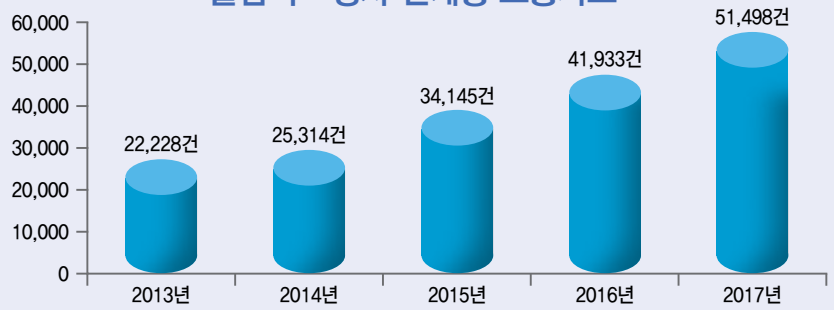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진주시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 꼭! 바꿉시다.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출처 :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이 지연되어 화재 사망자 증가 및 대규모 재산 피해 발생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면서 교통사고 위험 및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 야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